

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 민간위탁동의안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30.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
(2004. 5. 12)에 상정.
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
(2004. 5. 13)에 의결.

2. 제 안 설 명 요 지 (제안설명 : 상하수도과장 김 용 만)

가. 제 안 이 유

-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실무 협상을 완료, 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협약 체결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만경강·동진강 수질개선의 시급
- 민간자본 유치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
- 민간의 선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신뢰성·안정성 확보

[위탁대상시설]

시 설 명	사 업 내 용	사업규모 (㎡/일)	비 고
김제하수종말처리장	증설,고도개선및운영관리	33,000	증설 13,000, 고도개선 20,000
만경하수처리장	신규설치 및 운영관리	1,000	
금구하수처리장	"	600	
금산하수처리장	"	1,500	
죽산하수처리장	"	450	
축산분뇨처리장	운 영 관 리	305	축산 200, 분뇨 105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만경강·동진강의 수질개선이 필요시 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수처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-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, 또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.
- 검토결과,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김제하수도종말처리장의 5개 위탁대상시설 등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□ 1차 회의 질의답변

○ 질의 (위원 임형규)

-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만경강·동진강 수질개선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민간자본 유치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지와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직영 했을 때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비 차이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답변 (상하수도과장 김용만)

- 99년부터 민투협상을 하여 2000년부터 지방양여금을 미집행한 상태이며, 2005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되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건설비의 30%을 일시적으로 지방비(시비)로 부담해야 하므로 한꺼번에 시설할 수 없으며,

운영관리비는 기존의 하수, 분뇨, 축산처리장 관리운영비가 현재도 22억이며, 전체를 2006년부터 위탁 했을 때 37억으로 차이는 15억으로 전체를 기존방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절감됩니다.

○ 질문 (위원 김학주)

- 운영관리비 계산은 처리용량으로 합니까? 아니면, 처리량으로 합니까? 처리용량이 죽산의 경우 450톤을 400톤으로 축소하면 시설비는 증가되어도 시비가 10%만 들어가지만 운영관리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

○ 답변 (상하수도과장 김용만)

- 처리량이 처리용량의 43% 이하일 때는 고정으로 계산하고 43% 이상일 때는 처리량으로 계산합니다.

처리용량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
○ 질의 (위원 안길보)

-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,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만 하지 말고 다시 협상하여 전체사업비를 10%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?

○ 답변 (상하수도과장 김용만)

- 2년전부터 사업비에 대하여 실무 협상하여 585억을 26% 감하여 433억으로 협의된 금액이며, 추가로 다른 시·군하고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질의 (위원 김종성)

- 김제시내권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처리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3,000톤을 증설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, 신규시설인 금산·만경·금구 처리용량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, 위탁기간 시설장비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?

○ 답변 (상하수도과장 김용만)

- 처리구역내의 도시계획 인구증가 추이에 의해 2016년까지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.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민간위탁자가 합니다.

○ 질의 (위원 김성배)

-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 지분율을 알려주시고,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내권 하수관거사업 184억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지와, 김제는 동진강·만경강과 인접해서 있는데 만경강 수질이 149개 전국 하천 중에서 최저로 목표 수질에 미달되고 있습니다.

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해야하며 재정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.

○ 답변 (상하수도과장 김용만)

- 공동출자 지분을 변동은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 시내권 하수관거사업은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
앞으로, 민간위탁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.

또한,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○ 질의 (위원장 안기순)

- 전체 운영관리비가 37억원인데 이것은 기존 처리장 운영비를 빼면 얼마입니까?

○ 답변 (상하수도과장 김용만)

- 기존 처리장 운영관리비는 21억으로 증설되면 16억이 증액됩니다.

□ 2차 회의 질의답변

○ 질의 (위원 안길보, 임형규)

- 당초 동의안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? 만일 동의안 대로 가결이 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?

또한, 동의안이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?

○ 답변 (전문위원 배성권)

- 동의안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 안전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해야 하며, 변경 되었을 때는 전 안전을 철회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답변 (부시장 신균남)

- 가 협약에 따른 동의안이므로 환경부 설계자문에 의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재 협상 내용으로 협약변경을 하면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동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5. 토 론 요 지

□ 1차 회의 토론요지

- 김성배 위원
 -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김제시 재정 형편상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동의안을 가결해 주어야 합니다.

- 김학주. 임형규. 안길보. 김종성. 박봉규. 김문철. 안기순. 고성곤위원
처리용량 변경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.

□ 2차 회의 토론요지

- 안길보 위원
 - 본 동의안은 가 협약이 아니고 본 협약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.

- 안기순 위원장
 - 유보 결정했던 위원이 전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.

- 김문철 위원
 - 동의안이 시급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부시장이 변동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 했으므로 오늘 처리하면 좋겠습니다.

6. 심 사 결 과

-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찬성 4명. 반대 1명.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